

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

1. 추진 배경

- EU는 신EU관세법(UCC) 발효('16.5.1)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(Single Authorization)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
 - '16.5.1이후 발급된 C/O는 개정 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하도록 일선 세관에 안내 필요 ※ 「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('15.3.20.시행)」 적용불가

2. 주요 내용

- 관련규정
 - 「신EU관세법(Union Customs Code 952/2013)」 제26조
 - 「인증수출자 안내서(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)」 제3.3.4장
 - 「신EU관세법 시행규칙(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/2447)*」 제67조
 - *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 「EU관세법 시행규칙 1207/2001」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

□ 규정내용

- 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/2013 (UCC) 제26조
 -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(인증 등)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
- 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.3.4장
 -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(원산지증빙자료 기록·보관 의무)
 -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

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/2447 제67조

-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
-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(人)에게만 부여

<新UCC 관련 EU집행위 회신('20.6월)>

- 인증수출자 인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,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 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
- 인증수출자와 타 회원국 수출서비스 제공자는 특수관계(본사-지사 관계 등)가 아니어도 무관

- [검증요청 대상국]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,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에 송부해야 함*

* (근거) 「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」

<UCC 개정 전후 내용 비교>

구분	UCC 개정('16.5.1) 전	UCC 개정('16.5.1) 후
포괄인증 신청여부	• 자신이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	•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EU영역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함
수출국회사 명시의무	• 인증서에 다른 회원국인 수출국 및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	• 인증서에 수출국·회사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
통지의무	• 포괄인증 신청받은 관세당국은 인증 후 관련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의무 有	• 한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하므로 관련 회원국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음

참고 1 EU 인증수출자제도의 관련규정 및 주요내용 비교

UCC 개정('16.5.1) 전	UCC 개정('16.5.1) 후
<관련규정 및 주요내용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/2013 (UCC) ('16.5.1.부터 발효) <p>제26조(전 EU영역에 미치는 결정의 효력)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은 EU의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하다.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.3.4장 <p>3.3.4장 다른 회원국에서의 수출</p> <p>- 신청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,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(원산지증빙자료 기록·보관 의무)</p> <p>추가신청은 필요없고,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함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 Council Regulation 1207/2001 (EU관세법 시행규칙) <p>(3)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하나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출하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때때로 상품 수출이 이루어지는 각 회원국별로 개별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.</p> <p>제8조 1.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을 포괄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/2447 (신EU관세법 시행규칙) <p>제67조 1.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</p> <p>제67조 3.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(人)에게만 부여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('14.2월) <p>-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,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에 송부</p> <p>- 한 EU회원국에서의 인증수출자 인증은 몇개의(several)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('18.6월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동</p>

참고 2 EU의 현행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(요약)

I. 관련 규정

-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/2013 (UCC)('16.5.1.부터 발효)
-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.3.4장
-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
- 신EU관세법 시행규칙 (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/2447)

II. 주요 내용

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/2013 (UCC) 제26조

-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은 EU의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

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.3.4장

- 인증수출자 신청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(원산지증빙자료 기록·보관 의무)
- 추가신청은 필요없고,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함(UCC 제26조)

③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

-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,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(인증번호의 시작 국가코드 2자리로 쉽게 인식)에 송부해야 함

4 신EU관세법 시행규칙 (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/2447)

○ 제61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와 신고서의 사용

-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가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공급자는 원산지신고서로 해당정보를 제공하며, 장기 공급자원산지신고서(제62조)를 제외하고 탁송화물 단위로 개별 작성
- 공급자는 해당 탁송화물과 관련된 상업송장, 인도증서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기타 상업서류에 신고서를 작성
- 공급자는 언제든지 신고서 제공 가능, 상품이 인도된 이후에도 가능

○ 제63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작성

- 공급자원산지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수기 서명이 있어야 함. 단, 공급자원산지신고서와 송품장이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, 이러한 서류들은 전자적으로 인증될 수 있거나
-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모든 전자적 공급자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자신이 수기로 서명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할 수 있음

○ 제64조 정보증명서 INF4의 발행

- 세관당국은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과 진위성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서 INF4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음
- 공급자가 신청하면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정보증명서 INF4를 발행, 세관당국은 이를 위해 검증을 수행
- 세관당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증명서 INF4를 발행
- 세관당국은 정보증명서 INF4 신청서를 최소 3년 이상 보관

○ 제66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확인

- 수출자가 세관당국의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증명서 INF4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
-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에 모든 정보와 서류를 보내고 문의하는 이유를 명시
-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에게 증거를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수행
- 검증을 수행한 세관당국은 조속히 정보증명서 INF4로 결과 통보
- 검증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이 원산지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,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을 무효라고 공표

○ 제67조 인증수출자 인증

- 유럽연합이 역외국가와 체결한 특혜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신고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로 규정한 경우,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 설립된 수출자는 이러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
- 인증수출자 인증은 유럽연합이 연합의 관세영역 밖에 있는 특정 국가 또는 영역과 체결한 협정 등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인(人)에게만 부여함
-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세관인증번호를 부여하고, 인증번호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며, 앞 두 자리는 인증을 부여한 회원국의 ISO 3166-1 알파벳 두 자리 국가코드로 함